



보험종류별 예금보호 금액의 차등화 필요성

이승준 연구위원

은행 예금과 달리 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적 금융상품으로 조건부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험금도 손해사정을 거쳐 사후에 확정됨. OECD 주요국은 이러한 보험의 특성에 따라 예금보험과 별도로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종류에 따라 예금보험금의 지급액도 차이를 두고 있음. 금융소비자가 구매한 금융상품의 기능에 따라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예금보험 또는 계약자보호제도는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1998년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및 상호저축은행을 포괄하는 통합 예금보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보험 25개, 손해보험 22개 회사가 가입되어 있음¹⁾

■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예금보험에 가입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함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예금보호 상한액 없이 전액보장으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부분보장으로 환원된 후 예금보험 상한액은 현재까지 5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보장성이나 저축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성격에 관계없이 보험회사 단위로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함

● 이는 보험상품이 갖는 고유의 보장 기능을 간과하고 은행예금과 같은 저축성 기능만을 고려하여

1) 2017년 6월 30일 현재

은행예금과 보험의 적립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임

- 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보장(Protection) 기능과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Savings) 기능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함
- 한편, 예금자가 기대하는 은행예금의 기능은 현금을 안전하게 맡아 도난이나 멸실로부터 보호하고 원금에 대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것임

■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청구권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은행예금과 보험상품은 차이가 있음²⁾

-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가 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이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되는 금액은 은행예금과 달리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음³⁾
- 특히 자동차사고로 계약자나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합예금보험의 틀 안에서 5천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⁴⁾

■ 이러한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보험회사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은행방식의 예금보험이 아닌 별도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운영함

- 보험계약자보호제도(policyholder protection schemes)는 보험회사의 각출을 통해 기금을 정기적으로 거두는 사전적립방식과 필요할 때 각출하는 사후각출방식으로 나누어짐

■ OECD 주요국도 은행 대상 예금보험과 별도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망 보장과 연금 등 보험 종목별로 보험회사 지급불능 시 보장액이 다름(표 1) 참조)

- 영국과 일본에서 손해보험의 자동차배상책임과 같은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고 시 전액을 보장하며, 일본에서는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지진보험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장함
 - 그 외 의무보험이 아닌 여행자보험, 임의가입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서는 영국은 85%를, 일본은 80%를 각각 보장함
- 미국 전미보험감독자협회(NAIC⁵⁾)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장액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 성대규(2012), 『보험업법 개정판』, 도서출판 두남

3) 물론 보험도 은행예금처럼 저축기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액이 확정된 적립금을 가질 수 있음

4)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파산 등 지급불능 시에도 의무보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 보험회사들의 사후각출방식에 의한 제3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예금보험 보장액인 5천만 원 이상 피해자 1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짐

5)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300,000달러로 정하고 있으며, 환급금은 100,000달러로 권고함

– 또한 NAIC는 계약자보호를 위해 연금은 250,000달러, 주요 의료보험은 500,000달러를 보장하며 기타 의료보험은 100,000달러까지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는 공동보험 형태로 80%까지 보장하되 상한은 NAIC 권고액이며, 뉴욕은 사망보험, 개인연금, 의료보험 등의 보장 상한이 500,000달러로 NAIC 권고안보다 높음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⁶⁾)에서 250,000달러까지 보장하며 이는 NAIC의 개인연금 보장상한 권고액과 같은 수준임

● 캐나다의 경우, 사망보험은 200,000캐나다 달러, 건강보험은 60,000캐나다 달러, 환급금은 60,000캐나다 달러까지는 전액을 보장하지만, 초과액에 대해서는 85%까지만 보장함

– 단, 예금 성격의 저축성보험은 100,000캐나다 달러까지 전액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DIC⁷⁾)의 은행예금에 대한 예금보험 보장액과 동일함

● 프랑스의 경우, 사망보험에 대한 보장 상한은 125,000유로이며 그 외 모든 생명보험은 98,000유로까지 보장하고 있음⁸⁾

〈표 1〉 OECD 주요국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주요상품 보장액

국가		보험기금	생명보험(사망보장)	손해보험
미국	NAIC 권고	생명, 손해	300,000달러	300,000달러
	New York		500,000달러	500,000달러
	California		Max[80%, 300,000달러]	500,000달러
캐나다		생명, 손해	200,000캐나다 달러	250,000캐나다 달러
프랑스		생명	125,000유로	전액보장
대한민국		통합	5,000만 원	5,000만 원

자료: OECD(2013), New York State DFS Homepage; 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 Homepage

■ 우리나라도 통합예금보험제도상에서 금융상품별 및 보험종류별 예금보험금의 지급액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각 금융권역 소비자가 구매한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기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각 금융상품의 기능을 고려하므로 금융회사의 지급불능 시에도 금융상품의 기능을 고려한 예금보험금 지급이 예금자보호의 취지에 맞음 **kiri**

6)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7)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8) 참고로 은행예금은 프랑스 예금보장기금(FRDR)에서 100,000유로까지 보장하고 있음